

조선시대 직령(直領)제도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李珠英* · 權瑛淑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시간강사*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Jik-Ryoung of Chosun Era
-Focusing a True Record of the Chosun Dynasty-

Joo-Young Lee* and Young-Suk Kwon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ccording to the study of Jik-Ryoung(直領) consulting chronicles of the Chosun Era, Jik-Ryoung had been worn for various uses as official outfit, ordinary attire or clothes for the celebration of their coming of age, wedding ceremonies, funeral rites, and religious ceremonies, etc.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Chosun Era.

The conclusions are shown briefly as follows.

1. There are several terms of Po(袍) related to Jik-Ryoung in the chronicles under the name of Jik-Ryoung Ui(直領衣), Ui-Sal Jik-Ryoung(衣撒直領), and Jik-shin(直身).

Jik-Ryoung Ui is the other name of Jik-Ryoung that they called it when it was used for funeral rites and religious ceremonies. The Chinese Ye-Sal(曳撒) was called the Ui-Sal Jik-Ryoung in Korea, but this is different with Jik-Ryoung regarding its divided up and bottom style. Jik-Shin is almost same as Jik-Ryoung.

2. During the latter period of the Chosun Era, we can find different frequency in use of the Jik-Ryoung.

Jik-Ryoung was shown constantly in the cases of that king, Crown Prince and lower-level officials wore it for funeral rites and lower-level officials, artisans, merchants, humbles and slaves wore it for official outfit.

Uses of the Jik-Ryoung increased for military officers' outfits, in contrast to decreasing of uses for ordinary attires of king, Crown Prince, and the commons, and official outfits of civil officials.

3. These different aspects mean the change of estate and role.

For the basic four ceremonial occasions -the ceremonies of coming of 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or memorial-, it appeared constantly. Therefore the social role had been maintained also by then.

As an official garb, the role for official uniform of petty official maintained by the end of the Dynasty. But from the latter 1600's to the former 1700's, the roles for official garbs of

civil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decreased and increased respectively.

Before the Hide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ordinary social clothes had orders by people's social status who wore them ; those were Dan Ryoung(團領), Hong Jik Ryoung(紅直領), Jik Ryoung(直領), Cho'l Rick(찰릭) in the order named.

After the war, various Po(袍) of Do Po(道袍), Shim Ui(深衣), Jung Chi Mak(中致莫), Chang Ui(裳衣), Jang Ui(長衣), Ju Ui(周衣) and so on had been worn until the King Young Jo(英祖)·Jung Jo(正祖) period. In result, the social role of Jik-Ryoung was reduced as the uses decreased more and more.

For a mourning dress, it had a same aspect as the case of ordinary social wear.

4. Considering the color, they used blue for the clothes for doing-up-the-hair ceremony, white for mourning clothes, and white, black for ancestor memorial ceremony clothes.

On the official outfits of officials, dark blue and black were used mostly. And lower-level officials' clothes had white, red, and green on them. They used red and green for the plain dresses.

5. Examining the materials, clothes for the celebration of one's coming of age were made of high quality silks, Kwang Hwa Dan(廣禾緞). Also, they made clothes for funeral rites of rough and thick linen, and made clothes for religious ceremonies of linen and hemp. The official outfits were made of practical materials like cotton, hemp and ramie. Cotton, pongee and satin were used to make ordinary attire.

I. 서론

직령은 고려말 관복개정서 하나의 독립된 포제 명으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이후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사해복, 관복, 평상복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입혀져 왔던 포이다.

직령은 김미자의 연구¹⁾를 시작으로 일부 포제를 다룬 연구²⁾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주로 관복형 직령을 중심으로 용도 및 형태 변천에 대해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왔을 뿐 다른 편복포제와의 관계 속에서 직령이 차지하는 역할과 착용 빈도의 변화, 그리고 시기변화에 따른 직령의 형태 변천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령제도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이후 '실록'이라 약칭한다)을 중심으로 직령제도를 착용 용도별로 구분하여 시기별 변천을 살펴보고 나아

가 직령과 다른 포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당시 직령이 차지하였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령과 直領衣, 의살직령, 직신과의 관계를 명칭면에서 비교한다.

둘째, 직령의 용도별 형제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 시기변화에 따른 직령의 출현빈도의 양상을 고찰한다.

넷째, 다른 편복포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직령의 사회적 역할을 밝힌다.

본 연구는 실록과 국내·외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며, 편의상 시기구분은 복식변화의 시점이 되는 임란을 기점으로 임란 전까지를 전기로, 임란 이후부터 영·정조대 전까지를 중기로, 그리고 영·정조대부터 국말까지를 후기로 하였다³⁾.

실록은 직령에 관한 기록이 전 시기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어 시기별 직령제도의 변천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1) 金美子, "直領에 관한 연구", 『服飾』 제5호, 1981.

2) 李海英, "韓國 直領交襟式 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金美子, "우리나라 포(袍)의 종류와 변천",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편, 1995.

장인우, "조선중기 일상복의 구조와 구성 : 16·17C 출토복식 중심", 『服飾』 제35호, 1997.

李恩珠,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3) 권영숙·이주영, "조선 초·중기 여자 장의(長衣)제도: 임란전후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21집, 1996, p.122.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모든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사대부와 평민, 하층민의 복식제도에 대해 충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II. 직령의 명칭과 용도

1. 명 칭

실록에 직령과 관련있는 포제의 명칭으로 직령의, 의살직령, 직신 등이 있다. 명칭면에서 직령과 이들 포제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直領衣는 실록 중에 直領이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直領과 直領衣라는 형태가 서로 다른 의복이 각각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直領衣가 直領의 또 다른 명칭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直領과 直領衣라는 명칭의 사용례를 살펴 보기 위해 실록의 내용을 착용 용도별로 분류한 다음 直領과 直領衣의 명칭 사용횟수를 조사해 보았다(표 1).

〈표 1〉에서 보면 直領은 일반적으로 모든 용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直領衣는 상례복에서만 64.7%의 출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直領과 直領衣의 명칭 사용횟수

사용횟수	直領 (%)	直領衣 (%)	총횟수
冠禮服	8	0	8
喪禮服	12(35.3)	22(64.7)	34
祭禮服	0	1	1
官服	14	0	14
平常服	17	0	17
기타(賜典服)	11	0	11

그렇다면 왜 상례복에서는 直領衣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상례복 중에서 直領衣로 기록된 사례들만 분류하여 그 사례 속에 나타나는 다른 의복명들을 살펴본 결과 白衣와 黑衣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袂注褙이 袂注褙衣로⁴⁾, 團領이 團領衣로⁵⁾ 표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상적으로 착용되던 의복이 상례복으로 사용될 때 그 의복명 끝에 '衣'字를 붙여 '○○衣'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례의 경우 禮式이나 服制가 禮典에 맞게 엄격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조선시대 최초의 禮典인 《國朝五禮儀》服制條에 표기된 直領衣라는 명칭을 그대로 수용하여 표기했던 것이 관습화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直領과 直領衣의 명칭 혼용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예식을 주로 규정한 《國朝五禮儀》가 중요한 하나의 기본법의 성격으로 제정 이후 계속해서 조선사회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衣撤直領은 실록 중에 그 명칭이 단 1件 보인다. 그것은 선조 7년(1574)에 질정관 조현이 중국 경사(京師)에서 돌아와 중국문물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며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衣撤直領을 입은 것은 지금 文·武官의 제도가 같기는 하나 그 정제되고 의전한 모양은 본받을 만했습니다. ... 宦者들의 ... 옷은 蟒龍貼裡나 衣撤直領을 입었는데 그 길이는 북사 때까지 내려오고 帶는 細條兒를 사용하는데, 임금 앞에서 모시고 서 있는 자라할지라도 이 옷만 입기 때문에 봉록이 작은 宦者들도 구비하기가 쉽습니다.”⁶⁾

의살직령을 언해하면 이삭덕녕이 되는데, 이삭덕녕은 《老乞大·朴通事諺解》(1506~1517 추정)

4)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1446) 3월 27일(甲午)
 5) 「숙종실록」 권65 숙종 46년(1720) 6월 8일(癸卯)
 「영조실록」 권1 영조 즉위년(1725) 8월 30일(庚子)
 「영조실록」 권27 영조 6년(1730) 7월 4일(辛未)
 6) 「선조수정실록」 권8 선조 7년(1574) 11월 1일(甲戌)

7.8)와 《譯語類解》(1690)⁹⁾, 그리고 《李朝語辭典》(1964)¹⁰⁾에 衣撒로 되어 있어 결국 이삭덕녕, 즉 의살직령과 의살은 동일한 의복명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 문헌을 보면 ‘의살’이나 ‘의살직령’이라는 의복명은 보이지 않고 단지 明代에 曳撒 또는 袞襖, 襖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曳撒는 《老乞大》(1346년 추정)¹¹⁾에 “...靑羅曳撒...”¹²⁾이라 되어 있는데 이보다 이후에 간행된 《老乞大諺解》에는 동일한 문장이 “...靑羅衣撒...”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후대의 언해본에 曳撒이 衣撒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曳(yè)자와 衣(yī, yì)자의 중국식 발음이 비슷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³⁾. 따라서 衣撒直領과 衣撒과 曳撒(또는 袞襖, 襖褙)은 결국 모두 동일한 의복을 지칭하는 의복명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중국의 의복인 曳撒는 우리나라에서 衣撒直領으로 표기되어 이삭덕녕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의살직령은 직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나라 직령의 한 유형일 것이라는 가능성

을 제시하지만 유형원의 《鵝溪隨錄》에 의살직령에 대해 주하기를 “그 제도는 앞은 철릭과 같고 뒤는 직령과 같으며 좌우 양편에 襜褕를 잡아 달았다”¹⁴⁾고 되어 있어 철릭의 형제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즉 의살직령, 즉 예살은 형태면에서 우리나라의 직령과 유사하지만 앞은 철릭과 같이 上衣下裳式으로 허리 아래에 주름이 잡혀 있고, 뒤는 上下連結式이라는 점¹⁵⁾에서 직령과 다르다. 예살의 구체적인 형태와 직령과의 형제비교는 다음에 논하고자 한다.

끝으로 直身은 실록 중에 그 명칭이 모두 5件 보이며 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직신은 주로 우리나라 왕이 중국 사신에게 내린 하사품이거나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보낸 물품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에게 직신을 하사했다는 기록은 성종 10년(1478)에 유구국에 표류했다가 돌아온 김비의 등에게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의복인 직신을

<표 2> 조선왕조실록 중 直身 내역

연 도	작 용 자	색 상	재 질	비 고
1468년(세조14)	강육, 김보(중국 사신)	黑	麻布	왕의 하사품
1469년(성종1)	(중국 사신)	黑	麻布	왕의 하사품
1477년(성종9)	-	茶褐	紬	조선 사신의 도둑맞은 물건
1478년(성종10)	김비의(표류인)	-	-	왕의 하사품
1479년(성종11)	-	草綠, 黑	綿紬被, 麻布	북경에 보내는 別進獻의 품목

7) 「老乞大諺解」下, p.45. 「春問好靑羅衣撒」

8) 「朴通事諺解」中, p.51. 「將我木棉衣撒來穿」

9) 「譯語類解」上, 服飾, p.44.

10) 劉昌偉,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9, p.617.

11) 현존하는 老乞大는 크게 老乞大, 老乞大新譯, 重刊老乞大, 老乞大諺解本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이들 각본은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서 改修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老乞大는 原本을 잘 알 수 없지만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老乞大·朴通事諺解」, 아세아문화사, 1973, 노길대언 해례 p.2 참조)

12) 「老乞大」, p.40.

13) 曳撒은 袞襖, 襖褙이라고도 한다. 중국식 발음을 비교하면 曳와 袞는 yè이고 褙는 yì로서 衣자의 yī, yì와 유사하다.

14) 柳馨遠, 「鵝溪隨錄」 권25 續編(上)

15) 周汎·高春明, 「中國衣冠服飾大辭典」, p.205.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401.

중국 사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하여 하사하거나 중국에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직신은 이미 고려시대의 문헌인 《老乞大諺解》에 직령으로 이해되어 있고¹⁶⁾, 같은 책에 直身襖구가 직령옷으로 이해되어 있으며¹⁷⁾, 조선시대의 문헌인 《譯語類解》에도 직령옷으로 이해되어 있다¹⁸⁾. 따라서 중국의 의복인 직신은 우리나라에서 직령으로 표기되어 직령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 근거하여 형태면에서 직신과 직령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¹⁹⁾. 즉 명대의 문헌인 《酌中志》와 《明宮史》에 내신의 관복으로 착용된 직신에 대해 “제도는 道袍와 같다. 단지 외측에 자락[襟]이 있을 뿐이고 등급에 맞는 補를 달았다”²⁰⁾고 되어 있어 직신은 옆무가 있고 등급에 맞는 補가 달려 있는 의복으로서 우리나라의 직령과 유사한 형태의 의복임을 알 수 있다²¹⁾.

그런데 주석보는 내신이 公服으로 입는 직신은 사대부의 것과 다르다고 언급하면서 또 다른 유형의 직신을 제시했고²²⁾, 《服飾編(下)》에도 “직신은 交領右襟으로 이는 公服의 직신과는 다르다”²³⁾고 되어 있어 명대에는 내신이 관복으로 입었던 직신 외에 또 다른 유형의 직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신의 구체적인 형태와 직령과

의 형제 비교는 다음에 논하고자 한다.

2. 용도

실록에 나타난 직령의 용도는 사례복, 관복, 평상복,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다.

1) 사례복(四禮服)

직령은 관례, 혼례, 상례, 제례에 모두 착용되었다.

(1) 관례복(冠禮服)

직령이 왕세자, 왕세손의 冠禮²⁴⁾ 때 처음 방에서 나올 때의 옷으로 착용된 사례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직령은 효종 2년(1651)부터

<표 3> 조선왕조실록 중 冠禮服으로서의 직령 내역

연도	착용자	색상
1651년(효종2)	현종(왕세자)	鴉青
1670년(현종11)	숙종(왕세자)	鴉青
1743년(영조19)	사도세자(왕세자)	鴉青
1761년(영조37)	정조(왕세손)	鴉青

16) 「老乞大諺解」下, p.46.

17) 앞책, p.26.

18) 「譯語類解」上, 服飾, p.44.

19) 權瑛淑·李珠英·張賢珠, “海印寺 金剛尼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성보학술총서1, 1997, p.141.

李恩珠(1998), 앞논문, p.38.

20) 劉若愚, 「酌中志」권19「直身 製與道袍相同 惟有襟在外綴本等補…」

呂應, 「明宮史」권3 內臣服佩8 直身「製與道袍相同 惟有襟在外綴本等補…」

21) 「酌中志」와 「明宮史」에서 직신이 도포와 같다고 한 것은 의복구성면에서 다음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의복양식은 크게 上衣下裳式과 上下連結式으로 분류된다. 상의하상식에는 상의, 윗턱, 대슴, 순슴, 예살, 정자의 등이 포함되고 상하연결식에는 도포, 직첩, 직신, 난삼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전후 衣裳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兩者는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 의복의 깃양식은 크게 圓領(盤領), 交領(斜領), 直領(對襟)으로 분류된다. 도포와 직신은 모두 교령이라는 점에서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2) 周錫保, 앞책, p.398, 402.

23) 中華五千年文物叢刊 編纂委員會, 앞책, p.357.

24)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세자의 관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으나 일반 사대부들의 관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는 「四禮便覽」에 준해서 관례를 행했는데, 남자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치로도복 하였다. 禮書에 의하면 관례의 단계는 初加, 再加, 三加로 이루어진다. 「四禮便覽」에 언급된 관례복식을 보면, 가례 전에는 四摺衫, 초가례에는 深衣, 제가례에는 후衫, 삼가례에는 補衫을 착용하였다(李恩珠(1995), “전통 의복 복식의 변천”,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pp.231-233 참조).

영조 37년(1761)까지, 즉 현종의 관례 때부터 정조의 관례 때까지 처음 방에서 나올 때 입는 옷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세자의 관례는 1522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²⁶⁾ 직령이 관례시 착용된다는 기록은 임란 이후 1651년부터 있어 임란을 전후로 한 약 130년 간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다만 《朱子家禮》에 “장차 관례할 자가 처음 방에서 나올 때 사규삼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고, 《四禮便覽》에도 “처음 방에서 나올 때의 복색은 사규삼이다”²⁶⁾라고 되어 있어 임란전에 중국 사람들의 평상복인 사규삼이 착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의식 및 의관에 있어서 중국의 제도로부터 탈피하고자 했던 자주적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일찌기 고려 태조가 訓書(訓要十條)를 지어 온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만일 의관과 언어를 중국과 다르지 않게 한다면 민심이 定함이 없어 제나라로도 가고 노나라로도 갈 것이다. 韓服 이외는 반드시 중국제도를 다 따르지 말게 하고 언어는 사신을 통하는 이외엔 반드시 옛 풍속을 변경치 말아야 한다”²⁷⁾ 라고 했고, 조선 전기에 양성지(1415~1482)도 열두가지 郡道를 논하면서 아홉 번째로 의식은 우리나라의 풍속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²⁸⁾

따라서 관례시 처음 방에서 나올 때 중국에서 평상복인 사규삼이 입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는 그 당시 왕세자의 평상복으로 보편적이었던 직령이 입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관례시 비록 그 의식절차는 중국의 제도를 습용하였지만 착용 의복은 조선의 풍속에 맞게 당시 통용되고 있던 의복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령은 순조의 관례(1799) 때 정조가 “아침 직령이 《五禮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강학할 때 입는 옷을 입어라”²⁹⁾고 명하면서 이때부터 관례시 직령의 착용례는 사실상 사라지며, 이후 현종의 관례(1819) 때에는 도포가 착용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영의정 서용보 등이 현종의 관례에 대해 현의하면서 “우리 왕조의 직령과 도포는 모두 편복으로 옛날에는 사대부가 平居 때 대부분 직령을 입었는데, 근세에는 대부분 도포를 입는다. 입는 옷이 다른 것은 습속이 다르기 때문이나 그 실상은 같다고 하면서 처음 방에서 나올 때의 옷으로 도포를 착용하는 것이 타당하다”³⁰⁾고 주장하자 그대로 이행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관례시 처음 방에서 입고 나올 때의 옷이 직령에서 도포로 변화되는 것은 당시 사대부의 평상복으로 도포가 지배적으로 착용되던 현상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직령의 색상은 변함없이 鴉青色이 사용되었다.

한편 왕세자는 관례 때 처음 방에서 처음 나올 때 時服을 입는데 時服이라고 하는 것은 곧 평소에 입는 옷을 말한다. 시복으로 직령이 착용된 것으로 보아 직령은 왕세자가 관례하기 전에 입었던 평상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혼례복(婚禮服)

직령이 婚禮服으로 착용된 사례는 1件 보인다. 즉 세종대의 《五禮儀》에 혼례시 無冠者 주인의 上服으로 착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³¹⁾ 조선전기에 직령이 혼례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5) 세자의 관례는 1512년 11월에 시강관 윤은필이 관례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으니 위에서부터 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1516년 11월 시강원 유부도 관례의 시행을 아뢰었다. 관혼상제가 모두 인종의 중요한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상례와 계례만 다소 올바르게 행해졌으며 혼례는 비로소 친영이 행해지기 시작하고 관례는 거의 행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1522년 10월에 세자관례가 행해졌으나 상층에서만 행해지고 하층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다(고영진, 「조선중기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pp.58~59 참조).

26) 「四禮便覽」 권1 冠11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인의 윤리관 II」, 1984, p.45. 재인용.

28) 앞책, p.45.

29) 「정조실록」 권53 정조 24년(1800) 1월 13일(丙寅)

30) 「순조실록」 권22 순조 19년(1819) 3월 15일(丁未)

31) 「세종실록」 권134 오례의

<표 4> 조선왕조실록 중 왕세자 및 왕세손의 상례복으로서의 직령 내역

착용자	연 도	喪의 종류	색 상	재 질	비 고
왕세자	1446년(세종28)	先 내상일 경우	白	-	졸곡전 진현복
	1498년(연산4)	先 내상일 경우	白	-	대왕을 알현할 때
	1600년(선조33)	先 내상일 경우	白	-	졸곡전 진현복
	1608년(광해즉위년)	외상	白	-	졸곡후 公除官服
	1649년(효종즉위년)	외상	白	精細生布	서연복
	1701년(숙종27)	先 내상일 경우	白	-	졸곡전 진현복
	1718년(숙종44)	先 내상일 경우	白	布	길외에서의 心喪服
	1757년(영조33)	先 내상일 경우	白	生布	졸곡전 진현복
	1776년(정조즉위년)	외상	-	生布	公除후와 졸곡전 視事服
왕세손	1590년(인조23)	외상(왕세자상)	白	-	입금을 진현할 때
	1759년(영조35)	先 내상일 경우	-	-	孝昭殿 喪 뒤 무 혼전에 입현할 때

(3) 상례복(喪禮服)

상례복은 왕, 왕세자, 왕세손 등 왕족과 백관, 그리고 궁중 하급관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분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① 王族의 喪禮服

먼저 직령이 왕세자와 왕세손의 상례복으로 착용된 사례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직령은 왕세자의 상례복으로 세종 28년(1446)부터 정조 즉위년(1776)까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해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喪의 종류를 외상, 내상, 내상이 먼저 났을 경우로 분류해 볼 때 직령은 喪의 모든 종류와 절차에서 착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내상이 먼저 났을 경우 졸곡³²⁾ 전의 진현복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國朝五禮儀>의 服制條에 “(외상이 났을

경우) 왕세자는 斬衰 3년이니 衣裳을 입고, 왕위를 계승하면 면복을 입는다. ...내상에도 이와 같다. 만약 내상이 먼저 났을 경우에는 졸곡전에 진현할 때 白直領衣를 입고... 졸곡후에는 평상시와 진현시에 白衣를 입고... 祥祭에서 禫祭까지는 深染玉色衣를 입고... 禫祭에서 再期까지는 無揭赤色黑衣를 입고... 再期 후에는 吉服을 입는다”³³⁾는 규정을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규정은 조선시대 전기에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어 이후 왕세자의 상례복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오래와의 복제에 따라 준행되어야 한다는 주장³⁴⁾과 함께 조선후기까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직령은 내상이 먼저 났을 경우에만 착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외상인 경우에 착용된 적도 있었다.

즉 선조, 인조, 영조의 喪과 같이 외상이 났을 때 당시의 왕세자였던 광해군, 효종, 정조가 직령을 착용하였다³⁵⁾. 이 경우는 왕세자가 아직 관례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 服制에 대해 經에 의거

32) 卒哭은 사람이 죽은지 석달되는 초정일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33) 「國朝五禮儀」 권7 凶禮 服制

34)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1600) 7월 2일(癸卯)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1701) 12월 1일(癸丑)

35) 「광해군일기」 권4 광해군 즉위년(1608) 5월 25일(庚戌)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1649) 6월 12일(庚子)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1776) 3월 28일(己亥)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외상이라 하더라도 왕세자 복제 중 내상이 먼저 닳을 경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³⁶⁾.

한편, 왕세자가 내상이 먼저 닳을 경우 졸곡전에 직령을 입는 복제는 외상과 내상이 닳을 경우 衣裳, 면복을 입는 복제보다 그 服이 降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례 때 服이 降等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³⁷⁾ 이 경우는 왕이 살아 있는데 왕비가 死한 경우, 즉 夫가 생존해 있는데 妻가 死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표 4>에 의하면 직령은 왕세손의 상례복으로도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세손의 복제는 <國朝五禮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제도를 알 수 없지만, 영조 35년(1759)에 내상이 먼저 닳을 경우 왕세손이 탈상 뒤의 복색으로 공경전에 백직령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³⁸⁾ 왕세자의 복제에 준해 정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인조 33년(1590)에는 외상입에도 불구하고 직령이 착용되었다. 이 역시 왕세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세손이 아직 관례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왕세자의 복제 중 내상이 먼저 닳을 경우의 규정에 따라 그 복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왕세자와 왕세손은 내상이 먼저 닳을 경우 졸곡전 진현복으로 직령을 착용하였으며, 비록 외상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관례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복제가 내상이 먼저 닳을 경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령의 재질은 공통적으로 布와 生布가 사용되었고, 색상은 白色類가 사용되었다.

이 외에 직령은 왕자가 親의에서 心喪할 때에도 착용되었다³⁹⁾.

다음으로 직령이 왕의 상례복으로 착용된 사례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직령은 내상이 먼저 닳을 경우 왕의 졸곡전의 복제로 연산 4년(1498)부터 순조 23(1823)년까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해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大行 왕비의 상과 같이 내상이 먼저 닳을 경우에 왕의 복제가 明文에 없어 왕세자의 복제조에 근거하여 졸곡전의 복제로 직령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는 왕세자의 복제는 당연히 왕의 복제를 따른 것이라고 여긴 까닭에서였다⁴⁰⁾.

이상으로 왕 역시 왕세자의 경우처럼 내상이 먼저 닳을 때에 직령을 착용하였으며, 이 역시 외상과 내상이 닳을 경우보다 그 服이 降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百官의 喪禮服

태종 8년(1408) 5월에 외상, 즉 태조의 喪이 있을 때 예조에서 내외관, 문무백관, 부마, 각도의 대소 사신과 수령의 상례복으로 斬衰 直領을 착용하도록 상정하였다⁴¹⁾.

그런데 <國朝五禮儀>(1474)에는 외상인 경우

<표 5> 조선왕조실록 중 왕의 상례복으로서의 직령 내역

연 도	喪의 종류	색 상	재 질	비 고
1498년(연산4)	先 내상일 경우	白	-	성복후 졸곡전 兩殿을 뵈는 때
1600년(선조33)	先 내상일 경우	白	-	喪中 왕의 평상복 및 군신을 접견할 때
1626년(인조4)	-	白	-	졸곡전 繼廟과 所興를 진현할 때
1823년(순조23)	-	白	升麻	심상복

36) 「광해군일기」 권4 광해군 즉위년(1608) 5월 21일(庚戌)

37) 「喪禮備要」에 服이 降等되는 경우는 夫가 생존해 있는데 妻가 死한 경우, 父보다 子가 먼저 死한 경우, 어려서 死한 경우 등이 있다.

38) 「영조실록」 권93 영조 35년(1759) 2월 19일(庚午)

39) 「숙종실록」 권61 숙종 44년(1718) 5월 17일(乙丑)

40)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1600) 7월 2일(癸卯)

41)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1408) 5월 25일(癸酉)

이들의 복제로 圓領衣⁴²⁾가 규정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⁴³⁾. 원령은 단령의 조선초기 형태로서 끈 통포, 단령 등에서 胸背를 제거하고 무늬를 없앤 것이므로 결국 원령과 단령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따라서 당시 백관은 관복으로 입던 단령을 상례복으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선조 33년(1600)에 예조에서 백관의 成服으로 斬衰 단령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⁴⁵⁾ 이후에도 백관의 상례복은 《國朝五禮儀》의 규정대로 원령의, 즉 단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백관은 상례복으로 圓初에는 직령을 착용하였으나 세종대부터는 관복이었던 단령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宮中下級官吏의 喪禮服

직령이 궁중 하급관리들⁴⁶⁾의 상례복으로 착용된 사례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직령은 궁중 하급관리들의 상

례복으로 세종 28년(1446)부터 영조 33년(1757)까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해서 착용되었으며, 의상과 내상에 공통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國朝五禮儀》 服制條에 “(의상이 낫을 경우) 별감, 각차비인은 極麤生布 직령의를 입고 줄곡 후에는 백의를 입는다. 내상에도 이와 같다”⁴⁷⁾는 규정을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궁중 하급관리들이 의상과 내상에 직령을 입는 복제는 동일한 상에 왕세자와 왕이 의상, 면복을 입는 복제와 비교해 볼 때 그 服이 降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喪이라 하더라도 신분에 따라 착용되는 의복이 降殺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질은 極麤生布, 즉 극히 거칠고 굵은 生布가 사용되었으며, 색상은 生布가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紫色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조선왕조실록 중 궁중하급관리의 상례복으로서의 직령 내역

연 도	喪의 종류	색 상	재 질	비 고
1446년(세종28)	내상	白	布	줄곡전
1468년(예종 즉위년)	의상	-	極麤生布	대행대왕의 상제
1720년(숙종46)	의상	-	極麤生布	
1720년(경종 즉위년)	의상	-	極麤生布	
1724년(영조 즉위년)	의상	-	極麤生布	
1728년(영조4)	의상	-	極麤生布	
1730년(영조6)	의상	-	麤生布	
1752년(영조28)	의상	-	生布	
1757년(영조33)	의상	-	麤生布	

42) 「國朝五禮儀」는 중국의 복제를 따른 것으로 원령의는 중국 명대에 君王長子の 常服(「明史」 권66 志策42 輿服2)과 內外官 親屬의 官服(「明史」 권67 志第43 輿服3)이었으므로 당시 중국에서의 상례복은 관복인 원령이었음을 알 수 있다.

43) 「國朝五禮儀」 권7 凶禮 服制

44) 文光姬, “韓·中 圓領의 比較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pp.74~75.

45) 「선조실록」 권126 선조 33년(1600) 6월 26일(己亥)

46) 실록에 나타난 궁중하급관리의 예를 들면 별감, 소친사, 각차비인, 견마배, 정길달배, 보마배, 의대배의 諸員 등이 있다.

47) 「國朝五禮儀」 권7 凶禮 服制

(4) 제례복(祭禮服)

직령이 祭禮服으로 착용된 사례는 2件 보인다.

즉 세종 30년(1448)에 일본 사신 중 선주 이하 8인이 輝德殿에 進香할 때 흑마포직령의를 입었던 기록이 있고⁴⁸⁾, 숙종 27년(1701)에 왕세자가 왕후의 제사를 친행할 때 백직령의를 입었던 기록이 있다⁴⁹⁾.

이는 왕세자와 백관이 제례복으로 직령을 착용한 기록인데, 김장생(1548~1631)이 布直領과 孝巾을 廟祭制服으로 사용하도록 했고⁵⁰⁾ 또 진주하씨의 셋째 아들 憲昌(1615~1673)이 율유년 시절에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 베포 제사에 입을 직령을 만들도록 청하는 내용⁵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대부들도 제례복으로 직령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직령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1700년대 전반까지 왕세자, 백관, 사대부의 제례복으로 착용되었으며, 재질은 주로 黑麻布와 布가 사용되었고 색상은 백색과 함께 흑색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관복(官服)

직령은 문·무신의 관복, 하급관리의 관복으로 착용되었으며, 관복 중에서도 특히 평상시 업무를 수행할 때 입는 常服으로 착용되었다. 이에 대

해 신분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1) 文·武臣의 官服

직령이 문·무신의 관복 중 常服⁵²⁾으로 착용된 사례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직령이 문신의 관복으로 착용된 사례는 선조 25년(1592)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즉 “경기감사 권징(1538~1598)이 御駕 행차시 직령을 입었다”⁵³⁾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직령이 조선전기에 문신의 관복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직령이 무신의 관복으로 착용된 사례는 영조 19년(1743), 영조 26년(1750), 정조 16년(1792)의 기록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시기가 조선 후기에 집약되어 있고 모두 무신의 직령착용 금지에 관한 내용들이다.

무신의 직령착용 금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영조 2년(1726)에 “도승지 정형익이 무신이 흑철릭을 입고 수화자를 신는 것은 활쏘기에 편하고 걷기에 좋게 하려는 것으로 효종조(1649~1659)에 일찍이 이 복장을 하도록 申飭하였는데 점점 해이해져 모두 직령에 白靴를 신게 되었으니 다시 금지해야 한다”⁵⁴⁾는 주장이 있었다.

이어서 영조 19년(1743)에 “영의정 김재로가 무신이 철릭의를 입으려 하지 않고 반드시 직령을 입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니 신칙해야 한다”⁵⁵⁾

<표 7> 조선왕조실록 중 문·무신의 常服으로서의 직령 내역

신분	연도	착용자	비고
文臣	1592년(선조25)	권징(京畿監司)	어가행차시
武臣	1743년(영조19)	-	
	1750년(영조26)	김성웅(훈련대장)	출입시
	1792년(정조16)	이주국(총융사)	

48) 「세종실록」 권120 세종 30년(1448) 6월 21일(乙亥)

49)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1701) 12월 1일(癸丑)

50) 安燁, 「述古常制」 권13 喪服, 廟祭祭服, p.1263.

51) 金一振, “晉州河氏墓出土文獻의 概觀”, 건국대학교출판부 출판부, 1991, p.34.

52) ‘관복 중 常服’은 이후 관복으로 약칭한다.

53)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1592) 4월 30일(己未)

54) 李青郊, 「燃藜室記述」 別集 권13 政教典故

라고 했고, 영조 26년(1750)에는 “근래에 武臣이 처신을 文臣처럼 하는 것은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 … 이 뒤로는 무변이 직령을 입는 것을 엄히 신칙(申飭)하고 병조판서와 대장이 적발되는 대로 곤장으로 다스려라”⁵⁵⁾는 왕의 강경한 하교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상으로 직령은 조선전기에 문신의 관복이었는데 효종대부터 무신의 관복으로도 착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령이 무신의 관복으로 착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전반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시기는 곧 무신의 직령착용에 관한 논란이 싹트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영·정조대에 이르러서는 무신의 직령착용 여부를 놓고 문·무신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무신의 직령 착용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무신 가운데는 무신으로서 직령을 입지 않는 행위를 탓하기도 했는데, 정조 16년(1792)에 총용사 이주국이 한 두 亞將이 직령을 입지 않고 철력을 입었다고 해서 크게 꾸짖었던 사건이 있었다⁵⁶⁾. 결국 무신의 직령착용을 권장했다는 이유로 이주국이 백령진으로 유배되기까지 했으나 무신의 직령착용은 근절되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구조 속에서 직령은 마침내 순조대에 무신의 上服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문신의 직령 착용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는 《京都雜誌》(1749~1807)에 “길에서 儒者는 도포를 입고 朝士도 역시 이를 입는다. 그러나 무신은 常服으로 직령을 입는다”⁵⁷⁾라는 기록과 《松南雜識》(1808~1866)에 “도포와 유사한 직령은 무변의 上衣와 行衣로 착용되고 있다”⁵⁸⁾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살펴 본 결과 직령은 조선전기에 문신의 관복이었으나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전반경부터 무신의 관복으로도 착용되기 시작하였고, 영·정조대에 강경한 무신의 직령착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순조대에 무신의 上服으로 정착하게 된다. 문신의 직령착용은 무신의 직령 착용이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점점 줄어든다.

(2) 下級官吏의 官服

직령이 하급관리의 관복으로 착용된 사례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조선시대의 하급관리는 크게 문관의 하급관리, 무관의 하급관리, 궁중의 하급관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신분상 증인계층에 속하며 각 분야에서 실무적인 직책을 담당하거나 잡무에 종사하였다.

<표 8>에 의하면 직령은 하급관리의 관복으로 세종 28년(1446)부터 정조 2년(1778)까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해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종 28년(1446)에 의정부에서 服色詳定條件을 정할 때 各司諸員, 隊長, 隊副, 外方의 日守兩班에게 直領衣를 착용하도록 했으며⁵⁹⁾, 세종 31년(1449)에 다시 의정부에서 衣服禁制條件을 제시할 때 各殿·各宮의 別監과 小親侍, 典樂監의 樂工은 平常時에는 직령을 입고 差備時에는 단령을 입도록 하고, 外方의 鄉吏, 서울 안 上林園 別監, 隊仗, 隊副, 武士, 外方의 日守兩班에게 직령을 착용하도록 했다⁶⁰⁾. 이러한 규정은 이후 《經國大典》(1485)에 鄉吏, 別監, 關內各差備의 常服으로 직령을 착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제화되었다⁶¹⁾.

기록에 보이는 하급관리 중 日守兩班(일명 日守)과 鄉吏는 문관의 하급관리이고, 各司諸員, 隊長, 隊副, 武士는 무관의 하급관리이며, 別監과

55) 『영조실록』 권57 영조 19년(1743) 3월 14일(戊辰)

56) 『영조실록』 권71 영조 26년(1750) 3월 23일(丙寅)

57) 『정조실록』 권35 정조 16년(1792) 8월 3일(己巳)

58) 柳得恭, 『京都雜誌』 권1 風俗 巾服

59) 趙在三, 『校合 松南雜識』 林氏本, 한국학고사전총서(제1집), 동서문화원, 1987, p.613.

趙在三, 奎章閣本, 한국학고사전총서(제1집), 동서문화원, 1987, p.2046.

60) 『세종실록』 권112 세종 28년(1446) 5월 25일(壬辰)

61) 『세종실록』 권123 세종 31년(1449) 1월 25일(丙午)

62) 『經國大典』 권3 禮典 儀章

<표 8> 조선왕조실록 중 하급관리의 常服으로서의 직령 내역

연도	착용신분	색상	재질	비고	
1446년(세종28)	各司諸員	○	-	-	
	隊長, 隊副	○	-	-	
	外方の 日守兩班	●	-	-	
1449년(세종31)	各殿·各宮의 別監, 小親侍	▲	-	-	差備時는 단령 착용
	典樂署의 樂工	▲	-	-	
	外方の 鄉吏	●	-	-	
	京中 上林園 別監	▲	-	-	
	隊長, 隊副	○	-	-	
	武士	○	-	-	
1453년(단종1)	守陵官, 侍陵宦官	○	白	苧布	
	掖隸	○	紅	-	
1778년(정조2)	差備別監	▲	紅	-	성내·외, 궐내를 거동할 때 및 파문할 때
	亞將, 別軍職	○	-	-	

●: 文官下級官吏 ○: 武官下級官吏 ▲: 宮中下級官吏

樂工은 궁중의 하급관리이다. 따라서 직령은 조선 전기에 문·무관의 하급관리 및 궁중 하급관리들이 평상시 업무를 수행할 때 입는 常服으로 제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직령은 하급관리들의 관복으로 계속해서 착용되었는데, 단종 1년(1453) 5월과 6월에 왕이 수동관, 시종환관에게 백저포직령을 하사했고⁶³⁾, 정조 2년(1778)에는 예제의 관복으로 홍직령을, 그리고 차비별감이 성내, 성외, 궐내를 거동할 때나 파문할 때 홍색직령을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정해졌다⁶⁴⁾.

<표 8>에서 보면 직령은 무관 및 궁중 하급관리의 관복으로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

해서 착용되었다. 그런데 문관 하급관리의 경우 후기에 직령을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없는데 《續大典》(1746)에 “향리의 常服은 직령이다”⁶⁵⁾라는 기록이 있어 직령이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문관 하급관리들에게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직령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문관·무관·궁중 하급관리의 관복으로 변함없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령의 색상은 전기에 백색이 사용된 예⁶⁶⁾가 있지만 후기에는 주로 홍색이 사용되었으며, 別監의 경우 평소에는 홍색직령을 입다가 조정의 의식 때에는 녹색직령을 입었다⁶⁷⁾.

63)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1453) 5월 19일(乙亥), 6월 6일(申卯)

64) 「정조실록」 권5 정조 2년(1778) 4월 4일(癸巳)

65) 「續大典」禮典 儀章

66) 각주 62) 참조.

67) 「續大典」禮典 儀章

(3) 庶人 및 工 · 商 · 賤隷의 官服

직령이 庶人 및 工商賤隷의 官服으로 착용된 사례는 2件으로 세종 28년(1446)과 세종 31년(1449)의 기록에서 보인다.

즉 세종 28년(1446)에 의정부에서 服色詳定條件을 정할 때 서인과 공상천예에게 직령의를 착용하도록 했으며⁶⁸⁾, 세종 31년(1449)의 衣服禁制條件에도 서인과 공상천예가 직령을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⁶⁹⁾.

그런데 모든 서인과 공상천예가 직령을 입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高麗末 官服改定時 工 · 商 · 百姓들은 비록 有職者일지라도 高頂笠을 쓰고 直領을 입도록 한 것으로 보아⁷⁰⁾ 이들 중 특히 직업이 있거나 관직이 있는 사람 또는 노비로서役に 있는 사람은 직령을 上服으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직령이 庶人在官者의 公服이다”⁷¹⁾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관행은 조선후기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麗末 · 鮮初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관직이 있는 서인과 공상천예는 직령을 관복으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평상복(平常服)

<표 9> 조선왕조실록 중 왕족의 平常服으로서의 직령 내역

연도	착용신분	색상	재질	비고
1494년(성종25)	왕실종친	草綠	-	출입시
1518년(중종13)	왕	-	-	경연복
1603년(선조36)	입란진: 왕자군, 나이든 계상	草綠	紬	
1608년(광해군0)	왕세자	-	-	
1800년(경조24)	왕	-	毛緞	
1884년(고종21)	모든 신분	-	-	
1888년(고종25)				

68) 『세종실록』 권112 세종 28년(1446) 5월 25일(壬辰)

69) 『세종실록』 권123 세종 31년(1449) 1월 25일(丙午)

70) 高麗史(中) 志26 輿服, 아세아문화사, 1972, 始革胡服 依大明制, p.567.

7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권45 道袍辨證說

직령은 왕, 왕세자, 왕실종친과 사대부의 평상복으로 착용되었으며, 이를 신분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1) 王族의 平常服

직령이 왕족의 평상복으로 착용된 사례를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직령은 왕, 왕세자, 왕실종친의 평상복으로 성종 25년(1494)부터 정조 24년(1800)까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해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령이 착용된 기록이 왕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까지 있으나 왕세자의 경우에는 광해군 즉위년(1608)까지 있어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왕세자가 효종 2년(1651)부터 영조 37년(1761)까지 관례하기 전에 평상복으로 아청색 직령을 착용한 사실로 보아 직령이 조선 후기에도 왕세자의 평상복으로 착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직령은 출입할 때 또는 경연할 때 평상복으로 착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예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의 正服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광해 즉위년(1608)에 “왕세자가 비록 관례는 하지 않았지만 직령은 常服이지 正服은 아니므로 상전에 문안하거나 宮僚를 접할 때 常

服을 입고 예를 행하기는 미안하니 예관에게 다시 의논하여 정하게 하소서”⁷²⁾라는 기록에서 잘 알 수 있다.

직령의 색상은 주로 초록색, 아청색 등이 사용되었으며 재질은 紬, 毛織 등 고급 견직물이 사용되었다.

(2) 士大夫의 平常服

직령이 사대부의 평상복으로 착용된 사례를 요약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직령은 사대부의 평상복으로 태종 2년(1402)부터 고종 25년(1888)까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해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왕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령은 宴會時, 燕居時, 出入時의 평상복으로 착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예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의 正服은 아니었다.

즉 태종 2년(1402)에 “박석명이 임금의 명을 받들고 가니 단목지가 毛冠에 직령을 입고 帶를 띠지 않은 채 비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단

목지는 중국의 예의로써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 거동이 이 같으니 불초함을 알만하다”⁷³⁾고 하였고, 중종 23년(1528)에 왕이 말하기를 “만일 재상을 배알하려 했다면 절친한 사이가 아니고서야 어찌 직령을 입고 갔겠는가”⁷⁴⁾라고 하여, 직령 차림으로 신하가 임금의 명을 받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배알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남을 시사하고 있다.

직령의 색상은 주로 홍색과 초록색이 사용되었으며, 초록색의 경우 임란 이후에 더욱 널리 사용되었다. 재질은 綿布, 紬 등이 사용되었다.

4) 기 타

앞에서 서술한 용도 외에 직령은 왕실에서 사여된 경우가 많았는데 사여된 직령은 용도면에서 평상복이었던지 관복이었던지 단정짓기가 모호하여 기타로 분류하였다. 왕실에서 사여된 직령의 내역을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에 의하면 직령은 태종 5년(1405)에 여진족에게 사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국 사신과 두복 등에게 사여되었고, 우리나라의 통

<표 10> 조선왕조실록 중 사대부의 平常服으로서의 직령 내역

연 도	착 용 자	색 상	재 질	비 고
1402년(태종2)	단목지	-	-	연회시
1456년(세조2)	한확	土紅	綿布	좌의정
1509년(중종4)	윤순	-	-	출입시
1525년(중종20)	홍언충	淡染黃丹	-	
1528년(중종23)	생원, 진사	-	-	출입시
1528년(중종23)	송현	-	-	출입시, 순종참봉
1603년(선조36)	서생	草綠	紬	
1614년(광해군6)	儒士	紅	-	출입시
1691년(숙종17)	김정열	-	-	
1884년(고종21)	모든 사람	-	-	
1888년(고종25)				

72) 「광해군일기」 권4 광해군 즉위년(1608) 5월 21일(戊申)

73)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1402) 2월 19일(壬午)

74) 「중종실록」 권60 중종 23년(1528) 1월 18일(申卯)

<표 11> 조선왕조실록 중 왕실에서 사여된 직령 내역

연도	착용자	색상	재질	비고
1405년(태종5)	도만호외 8인, 김철	-	木綿	김철(通事)
1455년(단종3)	장웅, 오수	鴉青	綿布	두목
1455년(단종3)	정동	-	麻布	중국사신
1456년(세조2)	김홍	黑	細麻布	중국사신
1460년(세조6)	-	鴉青	綿布	두목
1460년(세조6)	-	鴉青	綿布	두목 24인
1479년(성종10)	한성조, 이훈	鴉青	木綿	의주 直慰使
1479년(성종10)	-	鴉青	木綿	두목
1483년(성종14)	정동, 김홍	白	綿布	정동(上使), 김홍(副使)
1483년(성종14)	김홍	黑	細苧布	중국사신
1483년(성종14)	정동	黑	麻布	중국사신

사와 선위사에게도 사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사와 선위사는 외국 사신이 왔을 때 통역하고 영접하는 일을 담당했으므로 중국 사신과 사신을 맞이하는 관리 모두가 공통으로 직령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실에서 사여된 직령은 주로 관리들의 관복으로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직령의 재질은 주로 세저포, 세마포, 마포, 면포(木棉) 등이 사용되었으며, 색상은 저포와 마포인 경우에는 흑색이 주류를 이루고 목면인 경우에는 鴉青色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副使나 上使에게는 흑세저포, 흑세마포, 마포로 만든 직령이 사여되었고 두목에게는 아청면포로 만든 직령이 사여된 것으로 보아 신분별 上·下가 공통으로 직령을 착용하였으나 색상과 재질을 달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직령의 사회적 역할

실록과 문헌을 중심으로 직령제도를 살펴본 결과 직령의 용도별 출현시기와 출현빈도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에 의하면 직령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착용되었으며, 시기변화에 따라 직령의 출현빈도는 일정한 경향, 증가하는 경향, 감소하

는 경향 등 세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출현빈도의 변화는 곧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기변화에 따른 직령의 출현빈도에 기초하여 당시 직령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용도별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복

직령이 사례복 중 관례복, 상례복, 제례복으로 착용된 경우 출현빈도는 전 시기에 걸쳐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관례복, 상례복, 제례복으로의 직령의 역할 또한 조선시대 후기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령이 혼례복으로 착용된 경우는 기록이 조선전기에만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국가의 예식을 주로 규정한 《國朝五禮儀》의 내용이 禮가 일종의 법으로 인식되었던 조선사회에 후기까지 그대로 반영된 점과 실제 國初에 규정된 관례, 상례, 제례의 의식절차와 이에 사용된 복식의 색상과 재질이 후기까지 그대로 계승된 점 등으로 보아 혼례와 관련된 의식절차 및 복식 역시 國初의 규정이 후기까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직령은 사례복으로 착용된 경우 중에서 백관의 상례복으로 착용된 경우에만 유일하게 출

<표 12>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본 직령의 출현시기와 출현빈도

착용 응도		출현 시기						출현빈도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四禮服	冠禮服	왕세자		■	■	■	■	■
	婚禮服	사대부	■					■
	喪禮服	왕, 왕세자, 왕세손		■	■	■	■	■
		백관	■					↓
		궁중하급관리	■	■	■	■	■	■
	祭禮服	왕세자, 백관, 사대부	■	■	■	■	■	■
官服	문신		■	■	■	■	↓	
	무신			■	■	■	↑	
	문무관·궁중하급관리	■	■	■	■	■	■	
	서인·공상천예	■	■	■	■	■	■	
平常服	왕, 왕세자, 왕실종친	■	■	■	■	■	↓	
	사대부	■	■	■	■	■	↓	

■: 출현빈도가 일정한 경우

↑: 출현빈도가 증가하는 경우

↓: 출현빈도가 감소하는 경우

■: 실록기록으로 확인된 시기

■: 문헌기록으로 추정된 시기

현빈도가 감소되었다. 이는 백관의 경우 1400년대 전반까지만 직령을 상복으로 착용하고 이후에는 관복인 단령을 착용하였기 때문이다.

2. 관복

직령이 관복으로 착용된 경우 출현빈도는 신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 직령은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전반 경부터 무신의 관복으로도 착용되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문관의 직령착용은 감소되고 무관의 직령착용은 증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임진왜란 이후 무신의 세력 강화에서 비롯되는데, 무신은 당시 문관복으로 보편화되어 있던 직령을 착용함으로써 신분차별에 대한 불만을 의복을 통해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처럼 무신의 직령착용이 증가하자 문신의 반발 역시 증가하여 영조대에는 조정에서까지 여러 차례 무신의 직령착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정도였다.

둘째, 직령이 하급관리의 관복으로 착용된 경우 출현빈도는 전 시기에 걸쳐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이들이 비록 양반계층은

아니었지만 국가의 통치기구 속에서 적당한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지배계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향리의 경우 수령과 향청 및 常民의 중간에 위치하여 교량적 구실을 담당함으로써 그만큼 威儀를 갖추어야 했을 것이고, 별감의 경우도 官中의 大小儀式에 참여하거나 임금과 세자의 행차시 御駕 옆에서 侍衛·奉導하는 직분이었던 만큼 그 복장이 당당하고 정중해야 했을 것이므로 이들이 비록 하급관리이기는 했지만 그 복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었을 것이다⁷⁵⁾.

셋째, 직령이 서인, 공상천예의 관복으로 착용된 경우 출현빈도는 고려말 관복개정 이후부터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낸다. 《高麗圖經》에 의하면 서인이 가질 수 있었던 관직으로 省進士入官, 省曹補吏, 州縣令尉, 主簿, 司宰 등이 있다.

이상으로 직령이 관복으로 착용된 경우 하급관리의 관복으로서의 역할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전반 경부터 문관복으로서의 역할은 감소되고 무관복으로서의 역할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평상복

직령이 평상복으로 착용된 경우 출현빈도는 다른 편복포제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 감소하게 되

는데 시기별로 다음 세차례의 변화를 겪게 된다.

직령의 1차 착용빈도 감소는 임란 이후 도포, 심의가 사대부들의 평상복으로 널리 착용되면서 초래된다.

특히 도포가 임란이후 사대부들의 평상복으로 널리 착용되면서 직령의 출현빈도는 현저하게 감소되는데, 이는 《芝峰類說》(1614)에 “...평시에는 비록 연장자일지라도 행전을 치고 직령의를 입었는데 지금은 나이 젊은 자들도 다 도포를 입고 행전을 벗어 버린 채 분투를 입는다. 비록 자제들이 어른을 뵈 때도 또한 그러한 차림을 한다”⁷⁶⁾는 기록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鄉約⁷⁷⁾의 규범에 나타난 옷차림 풍속에서도 확인된다. 즉 향약의 4대 덕목 중의 하나인 禮俗相交의 내용에 사대부와 평민의 평상시 옷차림에 대한 규범이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尊者, 長者, 敵者, 少者, 幼子 등 다섯 등급⁷⁸⁾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상호간에 예로써 뵈거나 사사로이 뵈 때 규범에 맞는 옷차림을 하였다.

중종 13년(1518) 3월에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은 그곳의 인심 풍속을 교화하기 위하여 중국 문헌인 《朱子增損呂氏鄉約》(1130~1200)⁷⁹⁾을 처음으로 언해하였으며 이후 이를 계속 복인하여 지방의 향소에까지 널리 보급시켰다. 김안국의 《呂氏鄉約諺解》⁸⁰⁾(1518)와 같은 내용이 어윤곡(1536~1584)의 《栗谷集》⁸¹⁾, 유흥원(1622~1673)

75)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 p.1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4, p.682.

76) 李瑛光, 「芝峰類說」 권3 君道部 法禁

77) 향약은 지방자치단체의 덕화 및 상호협조 등을 위하여 만든 규약이다. 향약은 처음 중종 14년(1519)에 조광조를 위시한 신진사류들이 국가권력을 빌려 널리 실시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 뒤 개별적으로 각지에서 시행되다가 선조(1567~1608) 때에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향촌, 향단까지 유교윤리의 장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되었는데 사대부와 평민들은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었다(고영진, 「조선중기 역사사상」, 1995, pp.50~51; 이기백, 「한국사신론」, 1992, pp.273~275; 이홍직, 「국사대사전」, 1975, p.1706 참조).

78) 尊者는 자기보다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이고, 長者는 자기보다 나이가 10세 이상인 자이고, 敵者는 나이가 10세 미만인 자이고, 少者는 자기보다 나이가 10세 이하인 자, 幼子는 자기보다 나이가 20세 이하인 자이다.

79) 「朱子增損呂氏鄉約」은 원래 중국北宋末에 陝西省藍田縣의 呂氏一門 중 道學에 이름을 떨친 大忠, 大防, 大約, 大監 등 네 형제가 呂氏 家門뿐 아니라 향리 전체를 교화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엮은 일종의 規約집인 「呂氏鄉約」을 朱子가 加減 增補한 책이다.

80) 金安國, 「呂氏鄉約諺解」 朱子增損呂氏鄉約 禮俗相交 「曰凡少者幼者於尊者長者...禮見...有官...紗帽團領...無官者笠團領...唯四孟通用...有官者紗帽團領...無官者笠團領...燕見...團領直領...門狀...直領團領...凡尊者長者無事而至少者幼者之家所服...直領搭胡帖裏...敵者燕見...同上服... (중략)...未易服則率同約深衣...團領或直領...主人既成服...玉色團領...」

<표 13> 鄉約의 규범을 통해서 본 복식 내역

교제의 종류	착용 의복	呂氏鄉約 原文 (1130~1200)	입란 전		입란 후
			《呂氏鄉約諺解》 (1518)	《栗谷集》 (1536~1584)	《縉溪隨錄》 (1622~1673)
소자, 유자가 존자, 장자를 볼 때	禮見*	有官者：幘頭, 公服 無官者：幘頭, 襦衫	有官者：사모, 단령 無官者：림, 단령	단령, 직령(홍직령)	有官者：사모, 단령 無官者：단령, 심의, 직령
	燕見**	深衣, 涼衫	단령, 직령	홀, 겹, 홍직령	심의, 단령, 직령, 도포
존자, 장자가 소자, 유자를 볼 때	禮見	-	-	홍직령 (少者：단령, 홍직령)	심의, 단령, 직령, 도포
	燕見	深衣, 涼衫, 道服, 背子	직령, 철릭, 담호	입은대로 한다	심의, 철릭, 직령, 도포
적자 간에 서로 볼 때	禮見	帽子를 금함	단령, 직령	실낱새배：홍직령 사배：입은대로 한다	심의, 단령, 직령, 도포
	燕見	深衣, 涼衫, 道服, 背子	직령, 철릭, 담호	-	
상사서 조문할 때	未易服時	深衣	단령, 직령	素服	심의
	主人成服後	白生絹紗의 襦衫	옥색단령	素服	素服

* : 실낱에 세배하거나, 멀리 갈 적에 하직하고, 돌아와서 뵈옵고, 하례하고, 사배할 경우를 말함.

** : 안부를 묻거나, 의심나는 일을 문의하거나, 일을 여쭙거나, 부름을 받고 가거나 할 경우를 말함.

의 《縉溪隨錄》⁸¹⁾에도 기록되어 있다.

문헌마다 절목이 같지 않은 부분이 많고 또 당시 통용되었던 편복포제의 종류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입란을 전후로 한 평상복의 종류와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직령의 사회적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에 의하면, 먼저 입란 전에는 평소 교제할 때의 의복으로 단령, 직령, 철릭이 착용되었다. 그런데 예로써 교제할 경우, 즉 소자나 유자가 존자나 장자를 찾아 뵈는 경우이거나 장자가 소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자가 장자를 맞이할 경우에는 단령이나 홍직령이 착용되었고, 사사로

이 교제할 경우에는 입은 대로 하거나 홀·겹·습직령이 착용되었으며, 적자 간에는 철릭도 착용되었다.

따라서 입란 전에는 사대부의 평상복으로 단령, 직령(홍직령), 철릭이 착용되었으며, 이들의 복은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단령>홍직령>직령>철릭이라는 순위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입란 후에는 평소 교제할 때의 의복으로 입란 전의 단령, 직령, 철릭과 함께 심의, 도포 등도 착용되었다. 이 중 단령, 직령, 심의, 도포는 예견과 연견에 모두 착용될 수 있었으나 도포의 경우는 예견이더라도 소자, 유자가 장자, 존

81) 李栗谷, 「栗谷集」雜著 海州鄉約 「…其一曰幼者於尊者…禮見…團領…燕見…單袷襦直領…少者於長者…禮見…團領或紅直領…若燕見則惟所服 但不可以私服見 私服謂非直領也…少者之家有慶則長者亦當躬賀著紅直領…凡敵者…紅直領 謝則惟所服 凡尊者長者或往少者幼者之家…若非報謝則惟所服…(중략)…長者至少者之家 則先遣人通名 主人具衣冠 若禮見則著團領或紅直領…(중략)…喪事… 女冠素服黑帶…若主人成服後…素服素帶…」

82) 柳馨遠, 「縉溪隨錄」卷9 教選之制 上 禮俗相交 「曰凡少者幼者於尊者長者…禮見…有官者紗帽團領無官者團領或深衣直領…燕見…深衣團領直領道袍皆可通著…少者有慶尊者長者亦親往賀如其服…凡敵者…深衣團領直領道袍通著…凡尊者長者無事而至少者幼者之家 惟所服 深衣帖裏直領道袍皆可服之…(중략)…曰凡吊禮…同約 深衣往哭吊之…主人既成服則相率素服素帶…」

자를 찾아볼 때에는 착용될 수 없었다. 철릭은 다른 편복포제에 비해 출현빈도가 낮는데 연건 중에서도 존자나 장자가 보답이나 사례가 아니고 단지 심심해서 소자나 유자의 집을 방문할 경우에 착용되었다.

따라서 임란 후에는 사대부의 평상복으로 단령, 직령, 철릭, 심의 도포가 착용되었으며, 이들의 의복은 착용자의 신분에서 따라 단령>직령>심의>도포>철릭이라는 순위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단령, 직령, 철릭은 임란전과 임란후에 교체할 때의 의복으로 변함없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령은 예로써 교체할 때 주로 착용되는 의복이었고, 직령은 사사로이 교체할 때 주로 착용되는 의복이었는데 직령 가운데 홍직령은 임란 전에 단령 다음으로 예를 갖춘 의복이었다. 철릭은 임란전과 임란후에 사사로이 교체할 때 착용되었으나 그 착용례가 직령만큼 보편적이지 않았다. 또한 도포, 심의는 임란 전에는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았으나 임란 후에는 교체할 때의 의복으로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⁸³⁾.

그런데 김안국의 언해본을 보면 직령과 철릭은 그대로 언해되어 있으나 단령은 철릭으로 언해되어 있다. 단령, 직령, 철릭은 모두 당시 평상복으로 착용될 수 있었는데 이 중 단령은 관직이 있거나 혹은 관직이 있었던 사람에게 주로 착용되었으므로 일반 평민들에게 착용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김안국이 언해본을 저술했던 원래의 취지가 道民의 교화라는 점을 생각할 때⁸⁴⁾ 단령을 입을 수 없었던 관직이 없는 사람이거나 평민들은 단령 대신 철릭도 통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표 13>에서 삼사시 조문할 때의 옷차림을 보면, 1500년대 전반에는 역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단령과 직령이 착용되었으며, 주인이 성복한 후에는 옥색단령이 착용되었다. 그런데 김안국은 이 옥색단령을 흰옷과 옥색철릭으로 언해한 것으로 보아 관직이 없는 사람이거나 평민은 흰옷과 옥색철릭도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1500년대 후반, 즉 임란 직전에는 역복을 하지 않았을 때와 주인이 성복한 후에 모두 素服이 착용되었으며, 임란후에는 역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의가, 주인이 성복한 후에는 素服이 착용되었다.

따라서 1500년대 전반까지 조문복으로 단령, 직령, 철릭 등이 통용되었으나 이후에는 옷의 종류에 관계없이 백색류의 옷이라면 모두 가능했으며 특히 임란 이후에는 심의의 착용이 증가한다. 즉 임란을 전후하여 사대부의 편복포로 단령, 직령, 심의, 도포, 철릭 등이 착용된 것으로 보아 조문복 또한 이러한 종류의 의복들이 白色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상 살펴본 결과 직령은 임란 전에 평상시 교제복과 삼사시 조문복으로 널리 착용되어 사대부들의 대표적인 편복포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임란 전후 도포, 심의를 비롯하여 평상복으로 착용될 수 있는 의복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그 만큼 직령의 사회적 착용례는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직령의 사회적 역할 또한 감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령의 2차 착용빈도 감소는 영·정조대에 중치마, 도포, 창의, 주의, 장의 등이 평상복으로 보편화되면서 초래된다.

<承政院日記>에 의하면 영조⁸⁵⁾, 정조⁸⁶⁾, 순조⁸⁷⁾의 승하시 염습의로 사용된 의복의 종류와 수가

83) 심의가 임란 이후 널리 착용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 보면, 임란이후 조선 사회는 한편으로는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성리학 외에 새로이 대두되는 사상계에도 대처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강조된 것이 바로 「禮」였다. 심의는 의복 구성면에서 심연한 유교철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복으로서 당시의 의복 중 禮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의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란 이후에 유학자들은 유교철학, 즉 禮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심의를 즐겨 착용함으로써 의적으로는 禮의 생활화·실천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내적으로는 禮로써 마음의 윤리성을 규제해 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84) 金安國, 「呂氏鄉約·正俗 聽解(合本)」, 서울: 太學社(영인본), 1978, 呂氏鄉約聽解 解題 참조.

85) 「承政院日記」 권77 p.89(小斂衣褂), p.97(大斂衣褂), pp.97~98(實祥宮衣褂)

86) 「承政院日記」 권96 pp.820~821(小斂衣褂), p.831(實祥宮衣褂)

87) 「순조실록」 권48 순조 34년 11월.

〈표 14〉 《承政院日記》중 편복포제의 종류

王朝別 衣襟別	英祖 (1724~1776년)	正祖 (1776~1800년)	純祖 (1800~1834년)
襲衣	중치막, 도포	중치막(2), 주의(1), 장의(2),	-
小敝衣襟	중치막(17), 도포(8), 장의(17)	중치막(2), 도포(4), 창의(1), 철릭(2), 장의(2)	도포(2)
大敝衣襟	장의(3)	중치막(1), 도포(2)	-
實樺宮衣襟	중치막(36), 도포(12), 창의(2), 협수주의(2), 장의(33)	중치막(2), 도포(9), 창의(3), 직령(1), 철릭(8), 장의(7)	도포(11), 창의(4), 장의(3)
출현빈도 순 위	중치막(54)>장의(53)>도포(21)> 장의(2)=협수주의(2)	도포(15)>장의(11)>철릭(10)> 중치막(7)>장의(4)>직령(1)	도포(13)>장의(4)>장의(3)

※ ()안의 숫자는 사용된 의복수이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편복포제의 종류를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를 통해 3대에 걸친 편복포제의 출현빈도 변화를 보면, 영·정조代에는 중치막, 도포, 창의, 장의, 협수주의, 직령, 철릭 등 편복포제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포제가 착용되다가 순조代에는 도포, 창의, 장의로 줄어든다.

즉 1800년대를 전후하여 직령을 비롯한 중치막, 철릭 등의 출현빈도는 현저히 감소되고 도포, 창의, 장의는 그대로 착용되었는데 이는 철종 때의 문헌인 《松南雜識》에 편복포제로 심의, 도포, 장의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⁸⁸⁾.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특히 직령은 정조대에 겨우 1착만이 보일 정도로 그 출현빈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령의 출현빈도 감소는 임란 이후부터 있어 왔지만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전반 경부터 직령이 무신의 관복으로 착용되면서부터 보다 가속화되었다고 본다. 즉 무신의 직령 착용이 증가하자 일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편복포제가 요구되었을 것이고 이에 직령과 형태면에서 가장 유사한 도포가 널리 착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직령의 3차 착용빈도 감소는 고종 21년(1884) 사복제 개혁 당시 직령, 도포, 창의, 중의 등 廣袖衣가 窄袖衣로 대체되면서 초래된다.

즉 직령, 도포, 창의, 중의와 같은 광수의 소매가 넓어 행동에 불편하고 옛 제도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들을 착수의로 바꾸도록 하고 이를 양반이나 천민이나 다 같이 常服으로 한다⁸⁹⁾는 의복개혁령이 내려진 이후 점차 사라진다. 광수의 착용금지에 대한 언급이 1908년에 간행된 《婦女必知》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⁹⁰⁾ 1908년경까지 직령이 착용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의복의 실제적·기능적인 면이 강조된 것은 개화기 무렵 근대화 요구에 따른 결과인데,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임란 이후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800년대 이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착된 실학사상의 영향이라고 본다.

한 예로 일찍이 燕岩 박지원(1737~1805)은 “강차 말달리기, 칼치기, 창찌르기, 활튀기기, 둘팔매, 던지기 등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소매를 고치지 않고서 재 면은 이게 禮法이라 한단 말인가”⁹¹⁾라고 잘못된 의생활에 대해 비판·반성하였다.

88) 趙在三, 「松南雜識」 林氏本(稿卷, 衣食類, pp.612~613) 奎寧閣本(권3, 衣食類, pp.2045~2046)

89)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윤5월 25일·28일, 6월 3일

90) 「婦女必知」, p.22.

91) 朴趾源, 「燕岩集」 권14 熱河日記 玉匣夜話

당시의 실학자들은 가정의례를 간소하게 치르도록 하였고 백성들에게 검소함을 숭상하도록 하는 등 풍속의 허례허식을 비판하였는데 직령을 비롯한 광수의가 착수의로 변화되는 것도 이러한 실학적 사상이 의생활에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IV. 색상 및 재질

실록과 문헌을 중심으로 직령제도를 살펴본 결과 직령의 색상 및 재질은 착용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고 또 시기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된 경우도 있지만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용도별로 비교하면 <표 15>와 같다.

1. 사례복

직령이 관례복으로 착용된 경우 변함없이 鴉青色이 사용되었다. <尙方定例>에 의하면 왕세자의 관례 때 착용되는 직령을 만드는 데는 다음 등급의 鴉青廣禾緞 一匹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⁹²⁾.

직령이 상례복으로 착용된 경우 재질은 주로 생부가 사용되었다. 생부는 '삼배'를 말하는 것으로 고대 이래 喪服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재질로

서 주로 素色 그 자체로 사용되었으나 소색을 표백하여 白色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왕과 왕세자의 경우에는 약간 세밀한 생부가 사용되었고 궁중하급관리의 경우에는 극히 거칠고 굵은 생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喪服으로 상·하가 공통으로 직령을 착용하였으나 신분에 따라 재질을 달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집의 크기, 분묘제도, 옷의 길과 색 등 생활구석구석에까지 침투해 있던 유교의례의 차등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한편 제례는 의식의 성격상 상례와 유사하므로 사용되는 재질 또한 布, 麻布 등으로 상례복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색상 면에서 상례복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백색류인데 반해 제례복의 경우에는 흑색도 사용되었다.

2. 관 복

직령이 문·무신의 관복으로 착용된 경우 綿布, 麻布, 細麻布, 苧布, 細苧布 등이 사용되었으며, 면포의 경우는 아청색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백색도 사용되었고 마포, 저포인 경우는 흑색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백색도 사용되었다.

<표 15>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본 직령의 색상 및 재질 비교

착용용도		시기		
		입관 전	입관 후	
儀禮服	冠禮服	왕세자	—	鴉青色
	喪禮服	왕, 왕세자, 왕세손	白色	生布, 白布, 稍細生布
		백관	極麤生布	左同
		궁중하급관리	白布, 極麤生布	生布, 極麤生布
祭禮服	왕세자, 백관, 사대부	布, 黑麻布	左同	
官服	문·무신	—	白綿布, 鴉青綿布 黑麻布, 黑細麻布, 黑細苧布	—
		문무관·궁중하급관리	紅色, 白苧布	紅色, 綠色
		서인·공상천예	—	—
平常服	왕, 왕세자, 왕실종친	—	草綠紬	毛緞
		사대부	土紅綿布, 淡染黃丹細綿布, 草綠紬	紅色, 草綠紬

92) 「尙方定例」 권3 世子宮冠禮

이 경우 아청색, 흑색 등 주로 짙은 색상이 사용되었는데 관복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으로 착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사례복, 평상복의 경우와는 달리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제작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직령이 중중하급관리의 관복으로 착용된 경우에는 紅色, 綠色 등의 화려한 색상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이들이 중중의 대소의식에 참여하거나 임금과 세자를 侍衛·導導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만큼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행차시 시각적 확장미가 더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3. 평상복

직령이 평상복으로 착용된 경우 왕과 왕세자에게는 緞, 紬 등의 고급 견직물이 사용된 데 반해 사대부에게는 綿布, 紬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로써 사례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분에 따라 재질을 달리했음을 알 수 있다.

색상은 주로 홍색과 초록색이 사용되었다.

홍색은 직령의 색 가운데 사대부들에게 널리 선호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松窩雜說》에 “祖宗朝의 사대부 복색이 土紅으로써 上色을 삼으니 대개 朱土를 沈水하여 그 滓를 뽑고 말끔하게 달여서 膠를 섞어 붙들면 그 색이 爛然한데 國俗에 이르기를 土紅直領이라 함이 그것이다”⁹³⁾라는 기록과 세조 2년(1456)에 “왕이 명하여 좌의정 한확에게 土紅綿布直領을 주게 하였다”⁹⁴⁾라는 기록, 그리고 《芝峰類說》(1614)에 “土人으로서 관직이 없는 자도 사사로이 출입할 때는 또한 紅衣直領을 입었으니 내가 어릴 때에 목도하였다”⁹⁵⁾라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록색은 임란이후에 더욱 널리 사용되는데 특히 초록색 紬로 만든 직령은 임란 전에는 왕자군과 나이 든 재상만이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의복이었으나 임란 이후에는 사치풍속이 만연해져 젊은 書生들도 다 입게 되었다⁹⁶⁾. 이는 곧 임란 이후 사치경향이 저변층까지 확대됨에 따라 왕실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선호되던 색상과 재질

이 낮은 신분층으로 하향전파되었음을 상징한다.

한편 왕세자가 관례하기 전에 평상복으로 아청색 직령을 착용한 사실로 보아 아청색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이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직령제도를 살펴본 결과 직령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왕이하 평민의 관례복, 혼례복, 상례복, 제례복, 관복, 평상복 등 다양한 용도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록에 직령과 관련 있는 포제의 명칭으로 直領衣, 衣撒直領, 直身 등이 있다.

直領衣는 단지 直領이 사례복과 제례복으로 착용될 경우에 사용되기도 했던 直領의 異名으로 直領과 동일한 형태의 의복이다. 衣撒直領은 중국의 曳撒이 우리나라에서 표기되어진 명칭으로 뒤는 직령과 같이 上下連結式이지만 앞은 첩리와 같이 上衣下裳式이라는 점에서 직령과 다르다. 直身 역시 중국의 의복명이며 양 옆에 파(褳)가 있는 형태는 우리나라의 직령과 거의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2. 직령은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각 용도별 출현빈도를 달리한다.

출현빈도가 일정한 경우는 직령이 왕·왕세자·하급관리의 사례복과 하급관리·공상천예의 관복으로 착용되었을 때이고, 증가하는 경우는 무신의 관복으로 착용되었을 때이며, 감소하는 경우는 왕·왕세자·평민의 평상복, 문신의 관복으로 착용되었을 때인데 특히 평상복으로서는 세 차례의 감소 과정을 보인다.

1차 감소는 임란이후 도포, 심의가 사대부들의 평상복으로 착용되면서 초래되고, 2차 감소는 영·정조대에 중치마, 도포, 창의,

93) 金相離, 「松窩雜說」

94)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1456) 7월 18일(乙酉)

95) 李暉光, 「芝峰類說」 권3 君道部 法禁

96) 「선조실록」 권165 선조 36년(1603) 8월 10일(癸巳)

주의, 장의 등이 평상복으로 보편화되면서 초래되며, 3차 감소는 고종 21년(1884) 사복제 개혁 당시 직령, 도포, 창의, 중의 등 廣袖衣가窄袖衣로 대체되면서 초래된다. 이후 직령은 廣袖衣 착용 금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1908년경까지 착용되다가 서서히 사라진다.

3. 직령의 출현빈도의 변화는 곧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를 상징한다.

사례복으로서는 출현빈도가 후기까지 일정하므로 사회적 역할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관복으로서는 사례복과 평상복의 경우와는 달리 다양성을 보인다. 하급관리의 관복으로서는 출현빈도가 후기까지 일정하므로 사회적 역할 또한 그대로 유지되지만 문·무신의 관복으로서는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전반 경부터 문관복으로서의 역할은 감소되고 무관복으로서의 역할은 증가된다.

평상시 교제복으로서는 임란전에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단령>홍직령>직령>철릭의 순위구조 속에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한다. 즉, 단령은 예로써 교제할 때, 직령은 사사roi 교제할 때 주로 착용되는 의복이었으며 홍색 직령은 단령 다음으로 예를 갖춘 의복이었다. 철릭 역시 사사roi 교제할 때 착용되었으나 그 착용예가 직령만큼 보편적이지 않았다. 임란이후부터 영·정조대까지 도포, 심의, 중치막, 창의, 장의, 주의 등의 다양한 편복포제가 착용됨으로써 직령의 출현빈도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역할 또한 감소하여 사대부의 대표적 인 편복포가 도포로 변화된다.

조문복으로는 교제복에서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즉 직령은 1500년대 전반까지 단령, 철릭과 함께 보편적으로 착용되었으나 1500년대 후반부터 조문복이 옷의 종류에 관계없이 백색류의 의복으로 확대되고 또 임란 이후 백색류의 의복과 함께 심의가 주로 착용되면서 조문복으로서의 역할 또한 감소하게 된다.

4. 직령의 색상은 사례복과 관복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평상복에서는 다양성을 보인다.

사례복의 경우 왕세자의 관례복에는 아청색이 사용되었고, 상례복과 제례복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백색이 후기까지 변함없이 사용되었는데 제례복에는 흑색도 사용되었다.

관복의 경우 문·무신의 관복에는 백색도 사용되었지만 주로 아청색과 흑색 등의 짙은색이 사용되었으며, 하급관리의 관복에는 백색, 홍색, 녹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 중 홍색, 녹색과 같이 화려한 색상은 행차시 시각적 착각미가 중요시되었던 궁중 하급관리들에게 사용되었다.

평상복에는 홍색(토홍색), 황단색, 초록색, 아청색 등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홍색 직령은 임란전에 사대부들 사이에서 널리 선호되었고 초록색 직령은 임란전에는 왕실을 비롯한 상류층에서만 입을 수 있었으나 임란이후에는 사치풍조의 저변층 확대에 의해 보다 낮은 신분층에서도 착용되었다.

5. 직령의 재질 역시 사례복과 관복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평상복에서는 다양성을 보인다.

사례복의 경우 관례복에는 廣禾緞과 같은 고급 견직물이 사용되었고 상례복에는 전기부터 후기까지 변함없이 거칠고 굵은 生布가 사용되었으며, 제례복에는 布와 麻布 등이 사용되었다. 문·무신의 관복에는 綿布, 麻布, 苧布 등의 실용적인 재질이 사용되었고, 평상복에는 綿布, 綿紬, 毛緞 등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고서】

京都雜誌
國朝五禮儀
高麗史
礪溪隨錄
婦女必知
四禮便覽

喪禮備要
喪禮要解
尙方定例
松南雜錄
述古常制
承政院日記
呂氏鄉約諺解
燃藜室記述
燕岩集
五洲衍文長箋散稿
栗谷集
朝鮮王朝實錄
芝峰類說

【논문】

- 권영숙, 이주영, “조선 초·중기 여자 장의(長衣)제도: 임란전후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釜山大學 校家政大學研究報告 第21輯, 1995.
- 權瑛淑, 李珠英, 張賢珠,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성보 학술총서1, 1997.
- 金美子, “두루마기(周衣)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農村發展研究叢書 第5輯, 1980.
- 金美子, “直領에 관한 연구”, 《服飾》제5호, 1981.
- 金美子, “우리나라 포(袍)의 종류와 변천”,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편, 1995.
- 金仁淑, “朝鮮王朝 王의 小敝, 大敝, 實粹宮衣褂에 대한 연구”, 《服飾》제5호, 1981.
- 金仁淑, “포제(袍制)와 치마[裳]”, 《韓國의 服飾》, 서울: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金一根, “晉州河氏墓 出土文獻의 概觀”, 건필바 우박물관, 1991.
- 송미경, “염습의(斂襲衣)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劉頌玉, “사례복식(四禮 服飾)”, 《韓國의 服飾》, 서울: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劉淑津, “明代服飾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李樹鳳, “王亂前後의 喪禮攷”, 忠北大學校 博物館 調查報告 第8冊, 1983.
- 이우성, “한국의 사회사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길역사강좌2(한국의 사회사상1), 한길사, 1987.
- 李恩珠,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李恩珠, “전통 의례복식의 변천”,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편, 1995.
- 李海英, “韓國 直領交衽式 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장인우, “조선중기 일상복의 구조와 구성: 16·17C 출토복식 중심”, 《服飾》제35호, 1997.

【국내문헌】

- 金安國, 《呂氏鄉約·正俗 諺解(合本)》, 서울: 太學社 영인본, 1978.
- 고영진, 《조선중기에학사상사》, 한길사, 1995.
-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
- 李順洪, 《韓國傳統 婚姻考》, 學研文化史, 1992.
- 池斗煥,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4.
- 정혜경, 《深衣》,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編, 《한국인의 윤리관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한국학연구원(編), 《原本 國語國文學叢林(三次配本-21): 恩重經·地藏經·呂氏鄉約 諺解》, 대계각, 1988.

【중국문헌】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臺北: 丹青, 1986.
-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服飾編 下》, 臺北: 裕台公社, 中華民國七十五年, 1986.
- 黃能馥, 陳娟娟, 《中國服裝史》, 北京: 中國旅遊出版社, 1995.
- 周汛·高春明, 《中國古代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6.